

유럽환경정책 연구시찰



1996.11.10(일)-11.20(수)

삼성경제연구소

유럽 환경정책 연구 시찰 출발안내

1. 目的

- 國內 各分野의 主要 人士를 招請하여

- 유럽의 環境政策, 民間企業의 環境經營, 인프라 研究를 통해 國內 環境政策의 重要性을 浮刻시키고
- 社會指導層과 企業이 環境 分野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共感帶를 조성코자 함.

2. 日字 : 1996.11.10(일) - 11.20(수) (10박 11일)

3. 出發當日 案内

1) 비행편

- 출발 : KE 905(11.10 10:05 출발, 13:55 프랑크푸르트도착)
- 귀국 : KE 906(11.19 16:00 출발, 11/20 10:30 서울도착)

2) 모이는 장소 : 김포공항 신청사(국제선 2청사) 2층 외환은행앞

3) 모이는 시간 : 1996.11.10(일) 08:20

4) 도착시 홍석환 수석에게 도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당일 여권과 항공권을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4. 기타

- 1) 마일리지 카드(대한항공) 지참 요망
- 2) 개인 준비물 : 정장, 세면도구, 개인약품, 기타 개인필수품 준비요망
- 3) 여권(사진부분) 1부 복사, 사진 2매 지참
- 4) 행사 자료 중 CLEAR FILE은 가급적 지참바랍니다.
- 5) 기온은 현 한국기온과 비슷합니다.(여벌 옷 준비)
- 6) 연락처 : 삼성경제연구소 최지선(T:3780-8256, F:3780-8007)

◆ 目 次 ◆

I. 視察概要	-----2
II. 視察日程表	-----4
III. 名單	-----5
IV. 非常 連絡網	-----6
V. 호텔 利用 案内	-----7
VI. 生活 案内	-----8
VII. 訪問處 概要	-----10

I. 視察 概要

1. 視察 目的

- 유럽의 환경정책, 민간기업의 환경경영, 인프라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視察者

- 단체장, 교수, 공무원, 언론인 등 각계 인사 20名
- 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김태용 차장
삼성경제연구소 홍석환 수석

3. 視察日程 및 地域

- 일정 : 1996년 11월 10일(일) - 11월 20일(수) (10박 11일)
- 일정별 지역

기간	11/10-12	11/13-14	11/15-16	11/17-19	11/20
	일-화	수-목	금-토	일-화	수
방문처	독일지역 도착 독일환경부 비텔본매립장 BASF	스웨덴지역 스톡홀름시 환경자문 위원회	프랑스지역 OECD UNEP/IE 하수도	영국 지역 런던시 DTI	귀국 서울도착

4. 視察 内容

리빙 가이드
문

구 분	주요 방문처	관 심 내 용
방 문 처	① 독일 본 환경부 <i>Frankfurt - 환경정책 관련기관</i>	- 통일 후 환경정책의 변화
	② 비텔본 매립장	- 쓰레기매립현황과 운영방안
	③ BASF	- 선진기업의 환경경영현황과 추진방안
	④ 스톡홀름시	- 지하공간을 이용한 그린 타운 운영현황
	⑤ 환경자문위원회	- 정부와 민간과의 환경협조 체제
	⑥ OECD, UNEP/IE	- 국제기구의 환경정책현황과 향후방향
	⑦ 파리시 하수도	- 하수도 정리현황과 운영
	⑧ 런던시	- 템즈강 살리기운동의 현황과 향후방향
	⑨ DTI	- 무역에 미치는 환경정책의 영향

5. 視察 進行 FLOW



Ⅱ. 視察日程表

일 자	일 정	비 고
11. 10 (일)	서울 출발(10:05) KE 905 프랑크푸르트 도착(13:55) 본 이동	
11. 11 (월)	독일 본 환경부 [통일 후 환경정책의 변화] 비텔본 매립장 [쓰레기 매립현황과 운영방안]	
11. 12 (화)	BASF [선진기업의 환경경영 현황과 추진방안] 스웨덴 스톡홀름 이동	
11. 13 (수)	스톡홀름시 [지하공간을 이용한 Green Town 운영현황]	
11. 14 (목)	환경자문위원회 [정부와 민간과의 환경협조체계] 프랑스 이동	
11. 15 (금)	OECD, UNEP/IE [국제기구의 환경정책현황과 향후방향]	
11. 16 (토)	파리시 하수도 [하수도 정리현황과 운영] 인프라 견학	
11. 17 (일)	런던 이동	
11. 18 (월)	런던시 [템즈강 살리기운동의 현황과 향후방향] DTI [무역에 미치는 환경정책의 영향]	
11. 19 (화)	런던-프랑크푸르트-서울이동	
11. 20 (수)	서울도착(10:30) KE 906	

III. 名 單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공무원	1	박 대 문	환경부 정책총괄	과장	
	2	신 동 식	통산부	산업환경과장	
	3	문 정 호	환경부 기술총괄	과장	
학계	4	김 인 환	계명대 환경과학	환경과학대 학장	
	5	김 일 중	동국대 무역	환경경제 학회장	
	6	차 근 호	항공대 경영	교수	
	7	정 용	연세대	교수	
연구원	8	유 재 근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	
	9	문 길 주	KIST 환경연구센터	센터장	
	10	김 종 기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원장	
	11	이 승 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획관리실장	
단체	12	박 영 숙	환경사회정책 연구소	소장	
	13	김 재 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14	박 정 희	YWCA 건축기성회	회장	
	15	김 재 범	그린스카우트	사무총장	
	16	한 상 옥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언론 및 그룹	17	강 영 철	매일경제신문 기획부	부장	
	18	박 종 식	지구환경연구소	소장(전무)	
	19	김 태 용	지구환경연구소	차장	
	20	홍 석 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V. 非常 連絡網

부 서 명		담 당	전 화 번 호	비 고
삼성경제연구소		최지선 사원	02) 3780-8265 FAX)02-3780-8007	
프랑크푸르트		YU TRAVEL (유춘호 사장)	49-6929-0499 F)49-6928-9448	
스톡홀름		TUMLARE	46-8-679-5156 F)46-8-611-21210	
파리		MAN TRAVEL	43-35-02-06 F)43-35-02-67	
런던		DAI YOUNG TRAVEL	44-181-336-0733 F)44-181-336-0744	
숙 소	MARITIM		T) 49-228-810-80 F) 49-228-810-8811	11/10-11/11 (1박) Bonn
	HOLYDAY INN CROWN PLAZA		T) 49-69-680-20 F) 49-69-680-2333	11/11-11/12 (1박) Frankfurt
	SHERATON		T) 46-8-142600 F) 46-8-217026	11/12-11/14 Stockholm
	NIKKO		T) 33-1-4058-2000 F) 33-1-4575-4235	11/14-11/17 Paris
	FORUM HOTEL		T) 44-171-370-5757 F) 44-171-373-1448	11/17-11/19 London

V. HOTEL 利用 案内

日字: 月 日(), HOTEL名:

TEL:

項 目	細 部	内 容
1. HOTEL 到着	◦ HOTEL FRONT 移動(KEY受領)	
2. 個 人 私 物	◦ PORTER가 各室에 運搬	
3. Room 編 成	PARK, DAE-MOON	SHIN, DONG-SIK
	MOON, JUNG-HO	KIM, IN-HWAN
	KIM, IL-CHUNG	CHA, GUN-HO
	CHUNG, YONG	RYU, JAE-KEUN
	MOON, KIL-CHOO	KIM, JONG-GIE
	LEE, SEUNG-HWAN	PARK, YOUNG-SOOK
	KIM, JAI-OK	PARK, JUNG-HEE
	KIM, JAE-BUM	HAN, SANG-WOOK
	KANG, YOUNG-CHUL	PARK, JONG-SHIK
	KIM, TAE-YONG	HONG, SEOK-HWAN
	進行擔當者 宿所 ()號	
4.MORNING CALL TIME	時間 :	時 分
5. 朝 食	場所 :	
	時間 :	時 分
6. 施設物 使用法	◦ 食券(VOUCHER) 提出與否 (○ , ×)	
7.BAGGAGE TIME	◦ BAGGAGE TIME : (時 分)	
8. 出 發 時 間	◦ HOTEL앞에 待機中인 BUS에 (:)까지 乘車 要望.	

VI. 生活案内

1. 입국절차

-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도착 로비와 출발 로비가 모두 2층에 있고, 짐 찾는 곳은 1층에 있음.

2. 환전

- 공항내 각종 은행이 있어 어떤 은행에서나 환전 가능
- Exchange rate : DM 1.51/1\$(1DM=약 545원 정도)

3. 시차

- 한국과 -8시간 차이(한국 13시면 독일 05시)

4. 쇼핑

- 정밀기계, 공예품, 피혁제품, 문구류, 스포츠용품이 인기
- 상점개장시간
 - 월 - 금 : 09:00-18:00
 - 목요일 : 09:00 - 20:30(대형백화점 및 일부 상점)
 - 토요일 : 09:00 - 14:00
- 가격은 모두 정찰제로 할인은 안되며, 물건을 고를 때 손으로 만지는 것을 싫어함.
- 외국인의 경우 부과세(6-14%)를 환급받을 수 있음.

5. 교통

- 버스, S BAHN(시내전차), U BAHN(지하철), 택시가 있음.
- 시내전차: 티켓은 자동판매기에서 구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권으로 사용 가능함.
- 택시: 요금은 미터제로 기본요금은 3.6DM(1KM당 1.8DM임)

6. 통신

- 공중전화는 10PF, 1DM, 5DM를 사용함.
- 국제전화 : 서울의 경우 0082 + 지역번호(서울 2) + 전화번호
- 콜렉트 콜 전화 : 01-30-80-0082(안내와 통화)

비상 연락망

기간	일수	지역	연락망(호텔)
전일정	10일	국내	삼성경제연구소 최지선 TEL : 02-3780-8265 FAX : 02-3780-8007
11/10(일)-11/11(월)	1박	Bonn	MARITIM GODESBERGER ALLEE 53175 BONN TEL : 49-228-810-80 FAX : 49-228-810-8811
11/11(월)-11/12(화)	1박	Frankfurt	HOLYDAY INN CROWN PLAZA MAILAENDER STR. 1, 60598 TEL : 49-69-680-20 FAX : 49-69-680-2333
11/12(화)-11/14(목)	2박	Stockholm	SHERATON TEGELBACKEN 6, PO BOX 289 TEL : 46-8-142600 FAX : 46-8-217026
11/14(목)-11/17(일)	3박	Paris	NIKKO 61, QUAI DE GRENELLE, 75738 CEDEX 15 TEL : 33-1-4058-2000 FAX : 33-1-4575-4235
11/17(일)-11/19(화)	2박	London	FORUM HOTEL 97 Cromwell road London SW7 4nd TEL : 44-171-370-5757 FAX : 44-171-373-1448

7. 체류시 주의사항

- 위생은 양호한 편
- 수도물에 석회석이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식수는 사 마시는 것이 좋음.
- 가스가 없는 물은 STILLES WASSER나 OHNE KOHLENSASE라 함

8. 기후 및 복장

- 4계절이 한국과 비슷하나 흐린 날이 많음.

9. 기타 유의사항

- 비상약품 : 진통제, 소화제, 설사약, 우황청심원 등 지참
- 세면도구: 칫솔 및 치약, 면도기, 슬리퍼(호텔에 비치되어 있지 않음)
- 이동이 잦은 관계로 여행가방은 가볍고 작은 것이 좋음.

10. 출국

-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확인
- 탑승수속: 예약항공사 카운타에 여권, 항공권, 출국신고서를 제시하고, 탑승권(BOARDING PASS)을 받음.
- 출국심사: 여권 확인

방문처별 개요

1996. 11. 5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1월 11일(월)

1. 독일 환경부

독일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기능은 연방정부, 주연방, 그리고 지방자치에 의해 공유된다. 이중 연방정부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는 Ministry of Environment & Nature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이며, 이에는 다음의 부서가 있다.

- Environmental Planning & Coordination
- Water & Waste
- Environment and Health, Emission and Protection against dangerous Substances
- Nature Protection, Soil Protection
- Nuclear Safety

이번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 주연방 그리고 지방자치사이의 환경정책 협조 방안
- 독일에서의 환경정책 수단
- 통일후의 환경정책 내부화(동질화)
- 민간부문(기업)에 대한 환경정책
- NGOs의 조치 등

2. 독일 비텔본 매립장

비텔본 매립장은 독일 Hessen주 Groß-Gerau군에 위치해 있는 군지역 쓰레기 매립장이다. Groß-Gerau군은 Rhein-Mein 지역의 남서쪽에 있고 서쪽으로는 라인강, 북쪽으로는 마인강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Darmstadt시까지 접하고 있다.

군내 폐기물 처리는 RIEDWERKE 조합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다. RIEDWERKE 조합은 지역협동법상 목적조합으로써 Groß-Gerau군이 51%, 군내 14개 읍이 49%의 지분을 부유하고 있다. 이조합의 폐기물 처리 외에 다른 주요 업무는 상수도와 근거리 대중교통업무를 관리하는 일인데, 현재 약 2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텔본 매립장 설치시부터 직접 관여하고 지금은 운영을 맡고 있다.

Groß-Gerau군은 80년대초 구 폐기물매립장인 Morfelden 매립장의 사용종료가 다가오자, 후속 매립장인 비텔본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1981년 최초로 부지를 선정한 때부터 1990년 2월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소요되었다.

Groß-Gerau군은 1993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는데, 수수료 부담 때문인지 지역주민이 직접 쓰레기를 가져와 매립장 정문옆에 있는 성상별 쓰레기 용기에 투입하고 있었다. 주민이 직접 가져오면 무료로 반입되는데 이것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절약의식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비텔본 매립장은 낮은 산 형태로 매립되며 최대 매립량은 주변지역 대비 46m에 달하고 매립 용적은 약 3.8백만 m^3 이 된다. 그리고 Groß-Gerau군이 계획한 폐기물 발생 감축 내지 재활용 조치들이 일정대로 취해진다면 최소 25년간 이용가능하다.

매립장 기초공사는 지표상의 흙위에 약 150cm 정도의 기반공사를 실시하고, 매립장을 여러 구획으로 설정하여, 구획별·단계별로 매립계획 높이까지 매립하고 복토하여 나무심기 등 조경사업을 실시하며, 매립장

전체에 경사를 두어 우수등에 의한 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매립장 주변 하단에 장마등에 대비한 우수로를 설치하여 매립장에서 흘러 내린 빗물이 우수로를 통하여 매립장내 저수지(3개)에 저장해 놓았다가 화재시 사용하거나 또는 매립장 내의 주변 나무등에 살포하여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침출수 처리는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침출수 처리시설의 집수조, 폭기조, 침전지 등 모든 처리과정의 시설에 뚜껑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고, 침출수 처리과정을 생물학적 처리, 물리학적 처리를 거쳐 갈탄에서 추출한 분말 활성탄 처리를 하고 있어 최종 방류수를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침출수의 최종 방류수도 방류하지 않고 매립장내 저수지에 저장하였다가 매립장 내의 수목에 살포하고 있다.

매립장 건설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고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산(총 공사비 약 640억원, 침출수 처리비 약 94억원)이 지원되었다. 기본적인 차수를 위해서 강력한 HDPE(3mm)를 사용하였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점토층을 반드시 설치하였고, 차집을 위해서도 인공자갈보다도 효율적인 자연자갈을 쓰고 있었으며, 자연자갈을 35cm 높이로 깔고 있는 것 등 모든 사항을 법적인 규정에 맞추어 설계하고 시공하였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설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내부시설과 운영과정을 보여주는 등 홍보를 하고 있다.

11월 12일(화)

1. BASF

BASF 그룹은 세계적인 다국적 화학업체로써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BASF 그룹은 1995년에 320억불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생산제품은 모든 화학물질과 제품을 망라하고 있다. BASF의 성공은 합성 색소의 개발로부터 시작되어 농업용 제품, 유기화학 제품, 고분자 화합물, 비타민 등의 개발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BASF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64,000가지 이상일 정도로 기술개발 능력이 상당하다.

BAS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 기술개발 및 공장 운영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좋은 Benchmarking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경영 추진 방향
-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환경문제 의사소통
- 환경친화적 시설 시찰
-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 ISO-14000, EMS 대비 동향

11월 13일(수)

1. SKAF AB

지하공간을 이용한 Green Town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는 SKAF AB사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회사임.

이번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공간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하여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 진공식(Vaccum) 혹은 압송식(Pressure)에 의한 생활쓰레기 수집 시스템(Waste Collection System)의 도입 현황, 장·단점 등
-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 방법
- 주민들의 참여 현황
- 현장 견학 등

11월 14일(목)

1. Environment Department at Stockholm Regional Organization

주제 : Environment Control에 대한 Briefing

11월 15일(금)

OECD의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동향

I. OECD에 대한 이해

1. 개 요

선진공업국 중심의 총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간 정부차원의 정책협조와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1961년 9월 발족된 정책조정기구 성격의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이다.

회원국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유럽 19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랜드, 에이레), 미주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1개국(일본)으로 되어 있다.

2. 설립 배경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자유, 공산 진영간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군사안보와 이념안보가 중요시 되었다. 군사안보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의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를 견제하는 것이며, 이념안보란 공산주의 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부 유럽지역의 경제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유럽협력법(소위 "마샬플랜")'을 제정하여 막대한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 부터의 원조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948년 4월 16일 영국과 프랑스 등 16개의 수혜국들이 참여하여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설치하고 신속한 경제부흥을 위해서 생산증대, 생산설비의 현대화, 태환성 및 통화안정을 공동의 목표로 내걸고 집단경제 안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로 유럽의 국제수지 및 통화의 태환성 등 경제가 회복되자 수원기구로서의 OEEC의 존립이유가 상실되었으며, 1958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uncil)가 출범하고, 1960년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rea)이 출범함으로써 OEEC 회원국에 대한 통제가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유럽경제의 회복 및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지속으로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경제협력관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선·후진국간의 경제협력격차 확대로 남북문제가 세계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OEEC는 유사한 성격의 기구들을 포괄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정책을 주도할 기구로의 변화를 도모하여, 1961년 9월 30일 지역적 제한을 철폐하고 기존의 OEEC 회원국과 EEC 및 EFTA 참여국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까지 포함한 구미 20여개 국가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후 일본(1964년), 핀란드(1969년), 호주(1971년), 뉴질랜드(1973년) 등이 추가로 가입하여 24개 회원국으로 유지되어 오던 중 멕시코(1994년)의 가입으로 25번째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헝가리, 체코, 폴란드, 한국이 1996년에 가입하였거나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3. 설립 목적

① 경제성장 도모 : 회원국의 재정, 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최고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하고자 함.

② 대 개도국 경제원조 : 회원국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도상의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③ 자유무역확대 : 다자주의 및 무차별주의에 입각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공헌하고자 함.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는 ① 회원국 경제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 ② 과학기술의 발전촉진과 연구 및 훈련의 강화, ③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정책의 추구하고 다른 회원국의 경제저해 유발정책지양, ④ 자본이동 및 용역 등 경상무역외 거래의 자유화 등을 사용하고 있다.

4. 기본성격 및 운영방법

회원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국의 경험을 토론하는 한편, 회원국의 정부정책을 감시하는 일종의 협의체(Conference) 성격을 지닌 국제기구이다.

각국이 문제발생시 위원회를 통하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위 대면회의방식(Confrontation)으로 문제를 협의하고 검토한다.

이사회는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그 내용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Decision)' 및 협정과 '권고(Recommendation)', 그리고 정보제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결의(Resolution)'로 구성된다.

특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회원국의 절대적인 준수가 요구되는 '결정(Decision)'이 내려지지 않으며 단순한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가입절차

OECD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Council)에 가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위원회 및 부속기구의 가입은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으로서는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 유지국가, 인권존중의 문명국 등으로 되어 있다.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가입요건이 엄격하고 가입절차도 복잡한 데, 신규회원국은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ECD는 여타 국제기구와는 달리 회원국간에 강제성이 없고 신사협정에 의거한 자발적 상호협조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회원국의 가입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 회원국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첫째, 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제목적을 지지한다.

둘째, OECD의 규정(230여개의 결정, 결의, 권고, 선언 등)을 원칙적으로 준수한다. 그러나 규정의 대부분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적용의 유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셋째, OECD의 운영경비를 분담한다. 조직운영 분담금은 경제규모(GNP)를 기초로 결정되는데, G-7 국가의 분담금 비율이 전체의 83.7%에 이르고 있다.

(2) 권고적 의무

① GATT 제11조국 : 수출입 수량제한 일반적 폐지

② IMF 제8조국 : 경상지급상의 제한금지, 차별적 통화조치의 금지

③ 개도국 원조 :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3)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의무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OECD와의 협의 하에 양대 자유화 규약중 일부 항목의 적용면제 또는 적용유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7. 조직

OECD의 조직원은 총 1,8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이다. 전체적인 조직 구성은 <표-1>의 OECD 조직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이사회

이사회는 OECD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각료급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상주 대표회의는 월 2~3회 정도 개최한다.

(2)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14개국(G-7 상임위원국 + 비상위원국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무국 :

사무국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기구이다. 사무총장을 필두로 하여 9개의 국(Department 또는 Directorate)과 특별조직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원자력에너지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 교육연구혁신센터(CER :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개발센터(Dev : Development Center) 등이 있다.

(4) 전문분야별 위원회

전문분야별 위원회는 10개 분야의 위원회, 26개 전문분야별 위원회, 특정프로그램, 연구센터, 77개 실무 작업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분야 위원회: ① 경제정책, ② 환경, ③ 개발원조, ④ 공공관리, ⑤ 무역, ⑥ 금융, 재정 및 기업, ⑦ 과학기술 및 산업, ⑧ 교육,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 ⑨ 식량 및 농업, ⑩ 에너지

각각의 위원회 밑에는 수개 내지 수십개의 Working Group이 전문업무 분야별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추진한다.

8. 기 능

OECD는 다른 국제기구들과는 달리 특정 국가들만을 회원국으로 하여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클럽 성격의 상호협력기구이다. 그리고 회원국 정부의 관련자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Council)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회원국이 지켜야 할 규범을 설정하고 회원국들은 신사협정정신(Gentlemanship)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따라서 결정이나 권고 등을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제재수단은 없다.

그러나, OECD의 업무 및 설립목적 중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분야의 양대 자율화 코드, 즉 ① 자본이동에 관한 자율화 코드(Codes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및 ② 경상무역외 거래에 관한 자율화 코드(Codes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Transactions)에서는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로 하여금 동코드에 의하여 회원국들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의 준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감시 및 조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서 회원국들로부터 제출된 통지, 정보, 기타 설명자료들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어떤 회원국이 판단하기에 다른 회원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상기 위원회에 통지하며, 동 위원회는 해당국가에 이를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Council)에 관련사항을 보고하거나 이사회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상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분야의 경우에서도 몇 가지의 결정(Decision)에서 환경정책위원회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에 회원국들의 동 결정 이행상황에 대하여 감시(Follow-up)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9. 주요 실적

OECD의 주요 실적으로 연대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961 : 자본자유화 코드 채택
- 1965 : 개도국 원조 조건에 대한 권고
- 1969 : 선박수출 신용 조건에 관한 양해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권고
- 1972 : 공해문제의 오염자 부담원칙 선언(PPP : Polluter Pays Principle)
- 1974 : 무역서약 채택
- 1975 : 석유비축목표 합의 (IEA 주도)
- 1976 :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
- 1978 : 수출신용 Guideline 채택
- 1980 : Privacy 보호와 개인 Data의 국제유통에 대한 Guideline
- 1987 : 수출신용 Arrangement 규율강화 합의
- 1989 : 양대 자율화 코드(자본이동, 경상무역외 거래) 전면 개정

10. 국가별 예산분담

OECD의 연간 총예산은 2천억원 정도이며, 이는 주로 출장비,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지출된다. 예산은 크게 일반사업비와 특별사업비로 구성되는데, 일반사업비는 전회원국이 GNP 비율로 분담하되 최고 25% 이하, 최저 0.1% 이상 분담하며, 특별사업비는 동사업 참여국들만 부담한다(IEA, NEA, Data Bank, 교육연구 혁신센터, 화학물질 관리 Program, 철강위원회, 독일·이태리·일본어 번역 사업비 등).

국가별 납부 순위를 보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이 전체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G-7 국가중 나머지 5개국(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캐나다)이 35%를, 기타 17개국이 15%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입시 1.8%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순위로는 스페인 다음으로 9위가 되며(통독에 의하여 독일의 부담율이 높아지고 다른나라의 부담율이 낮아졌음), 금액으로는 1996년도 사업비 2,000억원 추정시 36억원 정도가 된다.

<표-2> 국가별 납부순위(1990년 총 1.76억\$: 일반 1.31, 특별 0.45)

순위	국 가	비율(%)	순위	국 가	비율(%)	순위	국 가	비율(%)
1	미 국	25.00	9	화 란	1.96	17	노르웨이	0.73
2	일 본	23.51	10	호 주	1.81	18	터 키	0.57
3	독 일	10.23	11	스위스	1.71	19	그 리 스	0.41
4	프랑스	7.84	12	스웨덴	1.44	20	포르투갈	0.31
5	이태리	7.84	13	벨기에	1.27	21	뉴질랜드	0.30
6	영 국	6.19	14	오스트리라	1.02	22	아일랜드	0.24
7	캐나다	3.85	15	덴마크	0.82	23	룩셈부르크	0.10
8	스페인	2.71	16	핀란드	0.80	24	아이슬란드	0.10

II. 한국의 OECD 가입관련 주요 이슈

1. 양대 자율화 코드

OECD는 각 나라의 기대수준에 맞는 의무의 수행을 요구한다. 한국도 OECD에 가입할 경우 여러 가지 의무수행을 요구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자본이동에 관한 자율화 코드(Codes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및 '경상무역의 거래에 관한 자율화 코드(Codes of Liberalization for Current Invisible Transactions)'에 의해 국내금융 및 외환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회원국 가입교섭시 가입희망 국가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과 OECD Acts (Decision, Recommendation) 각각에 대한 지위(Position)를 정해야 하며, 특히 양대 자율화 코드에 대해서는 유보사항, 조건, 자유화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OECD 가입을 위해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된 상태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금융 및 서비스 분야로서 단계적으로 외국 자본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 시장 개방폭을 넓혀 나가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이들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간섭 내지 지원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금융 및 서비스 분야도 상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세계무대에서의 국경없는 자유경쟁체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환경분야 이슈

1994년말 현재 OECD Act 총 178개 가운데 환경분야의 Act가 54개(결정 13, 권고 41)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서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정(Decision)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3>과 <표-4>와 같이 크게 화학물

질 관련 분야와 유해폐기물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표-3> 화학물질 관련 분야(8종)

결정번호	Title
C(81) 30 (final)	화학물질 평가자료의 상호인정
C(82) 196 (final)	시판전에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화학물질 평가자료
C(87) 2 (final)	의통제에 의한 환경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
C(87) 90 (final)	기존화학 물질의 체계적조사
C(88) 84 (final)	인근 국가의 피해를 미칠수있는 사고에 대한 정보교환
C(88) 85 (final)	유해물질 관련 사고의 예방 및 대응
C(89) 87 (final)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의 준수
C(90) 163 (final)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공동조사 및 위험 감소

<표-4> 유해폐기물 분야(5종)

결정번호	Title
C(83) 180 (final)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C(86) 64 (final)	유해폐기물의 OECD 지역으로부터의 수출
C(88) 90 (final)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C(90) 178 (final)	폐기물 국경이동 감소
C(92) 39 (final)	재활용 작업 목적의 폐기물의 국경이동 규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관련 결정의 전부가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당장 환경규정 및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유해폐기물 수출입 관리체계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의 향상이 불가피하다.

이 외에 OECD 업무의 본질이 Act의 제정에 의한 회원국 규제 보다는 회원국 정부들간의 정보교환, 정책협조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주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 종전의 기준설정 및 단속위주의 명령과 통제 형태의 환경정책을 지양하여, ① 오염자부담원칙 및 시장경제원칙 하에서 배출자 스스로가 생산공정개선, 제품질향상, 처리효율향상 등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 최소화 및 효율최대화,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달성토록 하기 위한 경제유인책(Economic Instrument : Tax on Energy and Raw Material, Charge, Fine, Subsidy, Tradable Permit, Deposit Refund 등)의 개발 및 적용, ② 환경정책과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타정책(경제, 산업, 농업, 건설, 인구, 교통, 수산, 산림 등) 간의 상충점 최소화 및 상호조화 최대화를 위한 정책통합 방안도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OECD 가입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각종 제도에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의 확산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제도 및 정책의 일관화의 향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III. 환경과 무역의 상호협조를 위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체결(체결 1947년, 발효 1948년) 당시 상황과 50여년이 지난 현재 사이에 현격한 무역구조 및 환경상태의 차이, 즉 무역량의 증대, 경제비중의 증가, 환경오염의 심화 등 과거의 규정과 현재 상황간의 괴리가 심화됨에 따라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GATT 환경관련 규정의 미흡

GATT의 환경관련규정으로서는 제 20조(일반 예외규정)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들간의 임의적인 또는 부당한 차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위장된 국제무역 규제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GATT 가입국들은 '인간과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및 '고갈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전(국내생산 및 소비와 연계시켜 사용될 경우에 한함)과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의 채택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막연한 조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2)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조치의 임의적 사용

이와 같이 GATT에서 규정한 상기 조항이 모호함에 따라 각국(주로 선진국)의 자국 형편을 위주로 한 임의적 적용 및 이에 따른 상대국과의 마찰(Dispute)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T 내의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분쟁의 사례를 들자면, ① 새끼 바다표범 가죽 및 관련제품의 수입금지(1985년, EEC 대 캐나다), ②호르몬 사용 소고기의 수입규제(1987년, EEC 대 미국), ③ Deposit/Refund System 미참여 Beer Container에 대한 세금부과(1991년, 캐나다 대 미국), ④ Tuna/Dolphin 논쟁(1991년, 미국 대 멕시코·EEC), ⑤ Gas Guzzler Tax, CAFE(1993년, 미국 대 EEC) 등을 들 수 있다.

(3) 각종 환경협약에서의 무역규제수단 사용 일반화

한편으로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협약들에의 참여촉진 및 협약목적의 달성과 효율 향상을 위한 무역규제수단의 도입과 확산추세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②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를 위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③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교역 협약(CITES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등을 들 수 있다.

(4) 환경정책과 무역정책간의 상충관계 심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환경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날 환경보전정책과 무역증대정책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상충관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표-5>와 같다.

<표-5> 환경보전 정책과 무역증대 정책간의 상충관계

환	무
경	역
- 에너지, 자원 사용의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최소화 - 자원사용 및 환경오염 관련 경제적 부담부여(에너지세, 자원세,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등) - 생산공정의 청정기술(Clean Tech)화 제품의 청정생산(Clean Product)화 (PPMs에 의한 직·간접적 규제) - 환경보전 목적의 직·간접적 무역규제	- 생산량 및 교역량 증대에 의한 경제성장 -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생산요인 외적부담 최소화 -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선택 - 무역 자유화, TBT 최소화

이상에서 제시한 4가지의 주요 이유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무역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보전을 최대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상호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 부문 간의 협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관계의 큰 흐름이다.

2. UR의 환경관련 의의

(1) UR 협상의 배경

1947년 GATT가 체결된 이후 국제투자의 급증, 서비스 분야의 무역 확대, 농업(여러 국가의 각종 형태의 농산물 수출입 규제 및 직·간접 보조),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및 투자에 대한 규정의 미비, 그리고 분쟁 해결 체계(Dispute Settlement System)의 미흡 등이 UR 협상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 UR 협정의 체결

1986년 9월 Uruguay의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GATT 통상각료회의에서 GATT 개정협상이 합의되었으며, 그 후 7년 이상의 협상기간을 거쳐 1994년 4월 15일 Marrakesh에서 UR Agreement에 통상각료들이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UR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UR의 최종 협정문은 무역과 관련된 주요 분야를 거의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분쟁 해결절차도 대폭 개선되었다. UR 협정문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두되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GATT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계승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신설을 합의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부터 정식 업무개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UR 합의문 서문에 '환경보전에 부응하는 무역정책 필요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에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급 결정에 의하여 WTO 내에 '무역과 환경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기로 합의하였다.

(3) UR에서의 환경관련 사항

1986년 UR 협상 개시 당시 협상 참가국들 사이에 환경과 무역간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주로 미국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UR Text 중 여러 곳에 환경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WTO 내에 '무역과 환경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환경과 관련있는 UR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WTO 설립 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서문에 Sustainable Development를 Guiding Principle의 하나로 포함시킴.

② 위생 및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란 인간과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충, 질병의 확산에 의하거나 식품, 음식, 사료 등의 첨가물 또는 오염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각종 절차 및 필요조건들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예로써 검역절차, 식품가공 및 생산방법, 도살 및 검사규정, 식품첨가물 허가절차, 살충제 잔류량 허용치 관련 절차 등이 있음.

③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 협정에서는 제품표준, 기술규정, 적합판정 절차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S&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목적의 기술요건들과 무역규제를 위한 위장된 요건들간의 구분을 정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 구비요건은 수입 상품에 대한 차별 금지, 필요 이상의 무역규제적 조건 금지, 새로운 제도들의 입안 단계에서부터의 공개적 진행 등이며, S&P에서와 같이 국내기준 설정시 국제기준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권장함(각국 정부의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설정 권리는 인정함).

④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전의 규정들보다 더 엄격한 조건들을 정하고 있으나, 환경분야의 경우 8.2(C)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의 환경보조금 지원을 허용함.

※ 8.2(C) : 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시설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들을 전부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함.

- 1회에 한함
- 소요 비용의 20% 이하
- 보조를 받은 투자대상물의 교체 및 운용비용에의 보조 금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함)
- 기업의 오염저감에 직접적으로 관련 및 비례하여야 하고,
제조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새로운 설비 및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기업들에게 공히 적용되어야 함.

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종전의 GATT 관련 조항에 비하여 분쟁해결 절차 각 단계별로 소요기한을 엄격하게 정함으로서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Panel의 결정(Decision)을 Council의 승인절차 없이 그대로 최종화함.

⑥ 환경과 무역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O 내의 다른 상설 위원회(무역개발 위원회, 국제수지 위원회, 예산·재정관리 위원회)와 동등한 권한 및 기능이 부여됨. 특히 관련 TOR에서 동 위원회가 무역각료들에게 다자간 무역체제 관련조항의 개정, 보완 등의 여부에 대한 추천권(Recommendation)을 갖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부여함.

(4) UR의 환경관련 미비점

PPMS(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System)에 근거한 제품의 차별 관련 사항, GATT와 국제환경협약과의 관계 정립문제, GATT가 허용하고 있는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의 규정, GATT 20조에 의한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 설정문제 등이 UR의 환경관련 미비점으로 남아있다.

3. OECD의 환경관련 동향

(1) 발단 및 전개

앞에서 설명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하여 1991년 6월 OECD의 각료급 이사회에서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공동으로 무역, 환경 양 분야간의 상호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분야간의 상호관계 분석 및 상충점 최소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5월 각료급 이사회에 작업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주요 보고 내용은 무역, 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것이며, 특히 앞으로 세부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방된 다자간 무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토록 지시하였다. 그 후 1993년 6월에 개최된 각료급 이사회에서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융화를 위한 절차적 지침서(Procedural Guidelines on Integrating Trade and Environment Policies)'를 승인하고 추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확정하였다. 이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국 정부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에 무역, 환경 양 분야의 '상호조화를 최대한 도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들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 하고 있다.

① 무역, 환경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의 최대한의 투명성 확보 및 상호 협의

② 상대방에 대한 영향 규명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무역정책 및 협약에 대한 환경적 검토, 환경정책 및 협약에 대한 무역측면에서의 검토'

③ 여러국가, 광범위한 지역,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상호 협조

④ 무역, 환경 분쟁조정 단계에서 무역에 따른 환경영향과 관련된 과학지식의 반영

그리고 OECD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은 10개 항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③, ④, ⑩항은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른 상태이다.

① Methodologies for Conducting Trade and Environmental Reviews: 무역, 환경정책 분석 방법

② Trade Liberalization and Environment: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PPMs): 상품제조공정 및 생산방법에 근거한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④ Use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환경보전 목적의 무역규제 수단의 유형과 무역에 대한 영향

⑤ Life Cycle Management and Trade: 제품 원료의 생산, 운송, 제조,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이 미치는 환경영향에 근거한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⑥ Harmonization Environmental Policies and Standards: 환경정책, 기준, 분석 방법 등의 상호조화 가능성과 타당성 모색

⑦ Trade and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기존 또는 신규의 무역 및 환경 관련 원칙 및 개념, 그들의 상대방 정책과의 관계, 지속적 발전의 성취와의 관련성

⑧ Economic Instruments, Environmental Subsidies and Trade: 환경정책에서의 경제적 수단(세금, 부과금, 오염배출권 거래 등), 환경보조금 등의 사용이 무역

에 미치는 영향

⑨ Environmental Policies and Competitiveness: 환경정책, 규정, 산업재배치 정책들이 기업의 경쟁력, 국제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⑩ Dispute Settlement: 환경관련 무역분쟁의 예방, 중재, 해소, 해결 등을 위한 방법

이상과 같은 진행결과를 토대로 해서 1994년 6월에 개최된 각료급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1995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각료급 이사회에서 그간의 협상결과 도출된 결론과 1993년 6월에 채택된 '절차적 지침서'의 회원국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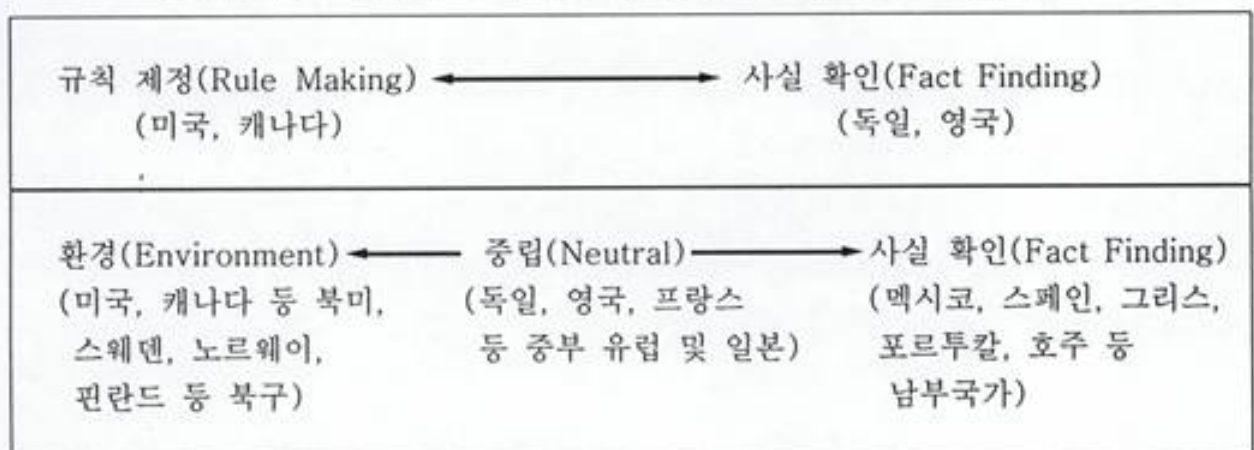
1994년말 각 회원국들에게 '절차적 지침서'의 반영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개월 내지 2개월에 한번씩 '무역과 환경 전문가 회의(Trade and Environment Expert Meeting)'를 개최하여 1995년 5월에 개최될 각료급 이사회에 보고할 자료를 협상중에 있다.

1995년 1월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미루어 예상할 때, 위의 ③, ④, ⑩항은 조만간 결론을 맺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석 및 협상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과 환경'이라는 안전 자체가 워낙 비중이 크고 특히 UNCTAD, UNEP 등 국제기구 및 기업협의체(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무역협의체(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등 업계 대표들이 OECD에 상주하며 상기 회의에 계속 참여하여 개발도상국 및 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어떤 안전에 대하여 OECD로서의 입장을 정하는 식의 결론을 끄집어 내기는 곤란하고 분석 결과 나타난 여러가지 사실 확인(Fact Finding) 식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OECD 회원국 사이에서의 입장차이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국의 입장차이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 환경과 무역에 관한 OECD 회원국간의 입장차이



(3) 향후 전망

1995년 5월에 개최될 각료급 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작업 및 협상 결과 도출된 결론과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업무분야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승인(Endorsement)을 받으면 비록 이것이 대내(OECD 국가들) 또는 대외(비OECD 국가들 및 다른 국제기구)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일단은 OECD 국가들이 신사협정(Gentlemanship)에 의거하여 충실하게 준수할 것이 기대되고, 이들 국가들의 교역량이 전세계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세계무역 질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의 '무역과 환경' 협상 참여국들이 WTO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OECD의 작업 결과(결정, 권고, 선언 등)가 WTO의 관련업무의 배경자료(Background Material)로 이용되어 장래 환경보전을 고려한 신국제무역질서 수립협상(소위 'Green Round')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다른 국제기구들의 동향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정식 출범하였는데, 그 안에 '무역과 환경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라는 강력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의 설치목적은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향상시키고 다자간 무역관련 규정 내용 중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도출 및 제안을 하는 데 있다. 무역과 환경 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3가지 부문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작업 결과는 차기 1997년에 개최될 'WTO 각료급 회의'(2년에 1회 개최)에 보고될 예정이다.

- ① 다자간 무역관련 규정과 환경목적의 무역수단(다자간 환경협약에서의 무역수단 포함)간의 상호 관련성 분석
- ② 다자간 무역관련 규정과 환경부과금, 환경세, 제품관련환경요건(표준, 기술 규정, 포장, 재활용) 간의 상호 관련성 분석
- ③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의 시장관련 환경제도가 미치는 영향 분석

(2)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최근에 '무역, 환경, 개발에 관한 특별작업단(Ad Hoc Working Group on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설치하고 환경정책이 개발도상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며, 그 일환으로써 환경마크제도, 환경포장, 기타 전과정 접근(Life Cycle Approach)에 의거한 제도들이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세부 분석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 개도국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상품의 수출증대 방안을 조사중이며, UNEP와 공동으로 '상품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의 내부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또한 UNDP와 공동으로 환경과 무역 관련 개발도상국이 겪은 사례조사 작업을 진행중이며, 그 결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보고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IV. 전망과 과제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켜 선진환경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이른바 '환경라운드(Green Round)'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규범이 대두됨으로써 환경선진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수년 내에 형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조만간 OECD에 가입할 경우에 대비해 보다 능동적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기업은 각자 나름대로 환경경영을 경영이념 내지 전략으로 설정하여 국제 환경경영 규격(ISO-14000)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UNEP/IE

UNEP는 1972년 6월 UN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회의에서 흔히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불리는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UN은 환경문제를 다룰 전문기구인 UNEP를 그해 연말에 창설하고 사무국을 케냐의 나이로비에 두었다.

이 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준비하였다.

UNEP/IE는 산업과 환경에 대한 조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UNEP 산하 부서로서, 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전략 추진
- 환경관련 산업활동 지원
- 장래 능력 개발

이번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정생산 프로그램 추진방향
- 오존층 보호 기술 개발 프로그램 현황
- 오존층 보호 조치 현황
- 산업환경관리 프로그램 현황
- APELL(지역사회내의 유해물질관리) 현황

최근 무역, 환경, 개발에 관련된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국제환경협약에서의 무역수단, 무역정책의 환경측면에서의 검토, 환경마크제도의 상호조화 도모 등을 주제로 해서 실무회의(Technical Meeting)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서의 무역관련규정, 국제환경법의 개념 및 원칙 등 여러가지 관련 자료들을 발행하고 있다.

11월 16일(토)

1. SERVICE DES ECOUTS DE FARIS

하수처리장의 견학

·
·

·

·

삼성의 환경정책 및 성과

1996. 11. 5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삼성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영이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류의 공동이익을 실현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삼성의 환경정책도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수립되어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삼성은 1992년 5월에 그룹회장의 환경관련 경영철학을 정리하여 '환경방침' 으로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삼성의 강력한 환경보전의지를 천명하였고 '클린테크, 클린라이프'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환경방침의 내용으로는 95년말까지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s 물질의 사용을 전폐하고 대기 오염물질과 지구 온난화 가스를 줄이기 위해 연료를 병커 C유에서 LNG와 같은 청정연료로 교체하며 96년말까지는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폐수를 처리하여 처리수에 물고기를 키우기로 하였고 지속적으로 산업폐기물 자체처리를 확대하여 깨끗한 국토를 보전하기로 하였다.

한편, 삼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업경영 차원에서 구체화 시키기 위해 삼성 녹색경영위원회의 위원장(삼성전자 강진구 회장)이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WBCSD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에서 논의된 내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창설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협의회로 환경효율적인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규격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 인증이 시작된 ISO 14000 시리즈도 이와 연계되어 있다.

삼성의 환경방침들이 대부분 1995년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철학인 녹색경영을 정립하여 1996년 5월에 선포하였다. 녹색경영은 고객들에게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삼성의 의지와 노력을 자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면서 도덕성 확보와 자연보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삼성 녹색경영의 기본 이념에는 삼성의 환경정책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삼성은 생명 외경사상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 한다는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삼성 녹색경영의 실천목표로 경영의 녹색화, 사업장의 녹색화, 공정의 녹색화, 제품의 녹색화, 사업장의 녹색화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경영의 녹색화는 녹색경영보고서 발간과 녹색정책·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기여, 사업장의 녹색화는 무공해, 무재해, 무질병 사업장의 구현, 공정의 녹색화는 폐수 무방류 사업장의 실현, 제품의 녹색화는 제품 전생애 책임주의 실현, 사업장의 녹색화는 대외 협력을 위한 삼성 그린파트너십 제도 운영을 구체적 실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삼성은 1992년 5월에 선언한 환경방침에 대한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첫번째로 CFCs 물질 사용 전폐에 대해서는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제와 냉장고 우레탄 발포제는 대체가 완료되었고,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정제는 80% 정도가 대체되었다. 특히 냉장고의 경우는 냉매제인 CFC-12를 HFC-134a로, 우레탄 발포제인 CFC-11은 싸이클론 펜탄으로 대체하여 Non-CFC 냉장고로 상품을 출시하였다.

두번째로 삼성의 37개 사업장중에서 30개 사업장이 청정연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연료 사용량이 85% 증가된데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3% 정도로 그쳤고 황산화물은 오히려 24%가 동기간중에 감소되었다.

세번째로 산업폐기물 자체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삼성의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역별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광역소각로가 추진되어 수원(84톤/일), 부산(12톤/일), 구미(85톤/일) 지역에 설비가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다.

네번째로 폐수처리수에 물고기 기르기 운동의 추진에 따라 대상 사업장 31개중에서 16개 사업장이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수 고도처리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대내외에 선언한 환경방침으로 1992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1,222억원이 추가로 투자되었다. 또한 환경방침을 마무리하고 녹색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2조 1,31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삼성은 또한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등장으로 환경·안전 부문이 경영의 핵심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 1993년 5월 '삼성지구환경연구소'를 설립, 환경·안전·보건부문에 대한 점검활동과 더불어 전략개발 및 연구를 전담토록 하는등 활발한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